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1호	90	150	300
나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관제통신을 청취·응답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2호			
1)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		300		
2) 관제통신을 청취·응답하지 않은 경우		90	150	300
다.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	법 제27조	60	100	200

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제2항			
라.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1항 제3호	90	150	300
마.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1항 제4호	90	150	300